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1 선고 2019가단1327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 2019. 6. 20.

판결 선고 2019. 7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,326,672원 및 그 중 44,826,996원에 대하여 2018.7. 1.부터 2019. 5. 3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,326,672원 및 그 중 44,826,996원에 대하여 2018. 7.1.부터 이

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기각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'소촉법'이라고 한다)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. 5. 21. 개정 · 공포되어 2019. 6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. 5.31.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%가 적용되나, 2019. 6. 1.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%로 변경되었으므로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 다.

판사 남수진

청 구 원 인

1. 본건 보험계약자인 피고 (주) C {이하 피고회사라 함}은 소외 E {주} {이하 피보험자라 함}와 상품거래약정을 각 체결함에 있어, 이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, 원고와 아래 보험계약내용과 같은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음.

보 증 보 험 계 약 내 용

	증권번호	보험계약자	피보험자	보험가입금액	보험기간	비 고
1	F	(주) C {변경전상호: (주) G}	E {주}	금30,000,000원	2015. 01. 07. - 2015. 11. 23.	
2	H	(주) C	E {주}	금30,000,000원	2015. 05. 29. - 2016. 05. 28.	

2. 위 2건의 보험계약체결시 위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,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,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음. {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5%를 적용함}

3. 피고 D는 위 1번, 2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, 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.

4.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는 피보험자와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, 그에 따라 원고는 위 1번 계약에 대하여 2015. 11. 27. 보험금 29,168,160원을, 위 2번 계약에 대하여 2015. 11. 27. 보험금 25,700,103원을 피보험자에게 각 지급하였음.

5.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,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1번 보험계약에 대한 ①지급보험금 29,168,160원 및 위 2번 보험계약에 대한 지급보험금 중 사전구상금 10,041,267원을 뺀 ②나머지 원금 15,658,836원 및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2018. 6. 30.까지의 ③합계지연손해금 13,499,676원 (1번계약 - 8,784,009원, 2번계약 - 4,715,667원)의 ①+②+③총 합계금 58,326,672원과 위 합계원금 44,826,996원에 대한 2018. 7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들과 약정한 합의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소를 제기함.

